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적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3. 감면대상자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사업자
-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제외
-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
- 영업용 차량
 - 2022. 6. 1. 현재 구미시에 등록되어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용 차량 소유자

4. 세목별 감면내용

○ 주민세 사업소분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2022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1)과 같은 목4)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2022년도 법인에 대하여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된 업종의 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2022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구 분		시 설 명
영업시간 제한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 재산세(착한임대인)

- 감면대상자는 과세기준일(2022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임대인
(단, 당초 임대차계약서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인하 전 3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
 - 2022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임대인
 -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2년도 부과 건축물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를 포함한다)를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 재산세 감면세율 산출

$$\text{해당 임대부분 재산세액} \times \text{임대료 인하율}$$

※ 임대료 인하율은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인하 비율을 말한다.

-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미만 시 임대료 인하율 환산식

$$\frac{\text{임대료 인하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 감면은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1) 임대료 인하율은 50%를 한도로 한다.

(2) 1항에 의해 산출된 감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 금액으로 한다.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자
- 기존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있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착한 임대인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재산세(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재산세 감면
 -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를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자동차세

- 2022년 제1기분 과세기준일(6. 1.)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영업용 차량(승용, 화물, 승합, 건설기계 등)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면제한다.
-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납하고 1)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환급 처리한다.

5. 감면방법 : 직권 또는 신청

6. 기타사항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 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허위로 감면받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 착한임대인 감면의 경우에는 부과 후 신청 기간 내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처리 한다.

7.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81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제1항1호 및 2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통보

(도 세정담당관-2314, 2022. 2. 15.)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조기 극복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으로,

○ 검토 결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22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액은 약 16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적시에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